# 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5년 3월 5일

나. 제 출 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3월 14일

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남 병 국

#### 나. 제안이유

○ '20. 12. 8. 개정된 상위법령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조례의 내용과 그 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 법규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O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
  -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비용 산정 조항 삭제 (안 제2조의2, 안 제2조의3)
  -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4조~제8조, 안 제10조~제16조, 안 제18조, 안 제19조)

#### 라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
  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| 및 같은 법 시행령
- O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.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# ○ 본 조례안은

•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 일치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• 전반적인 용어 및 띄어쓰기의 정비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, 제2항에서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된 [별지1], [별지2] 서식을 삭제하는 것으로, 행정 집행 시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설치납부금액 부과기준이 상위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며, 안 제3조 제4항은 조례로 위임된 변동계수1)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범위 내에서 최대 계수로 규정함에 따라2) 납부금액의 현실화를 꾀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집행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 개정을 적시에 계획하고, 띄어쓰기 등 단순 오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며, 향후 위 개정안과 같은 전반적 개정에 있어서는 일괄개정 또는 전부개정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<sup>1)</sup>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(제4조제5항 관련)

가. 소각시설 설치비 =  $1) \div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 \times 6) \times 7$ 

<sup>4)</sup>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.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

나.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=  $1) \div 2) \times 3) \times 4) \times 5) \times 6) \times 7)$ 

<sup>4)</sup>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1.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

<sup>2)</sup> 조례 개정안 제3조(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)

④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른 변동계수는 1.29로 한다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: <u>원안가결</u>